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사례연구

A Study on the Intellectual Freedom in Korean Public Libraries

정 현 태(Hyun-Tae Joung)*

목 차

1 서론	3. 2 자료선정의 사회적 기준-금서와 추천도서
1. 1 연구배경과 목적	3. 3 청소년에 대한 이용제한-유해도서 별치관리
1. 2 연구방법과 제한점	3. 4 이념자료의 열람제한-특수자료실
1. 3 용어정의	3. 5 이용기록 관리-이용자 비밀보호
2. 도서관 지적자유에의 이론적 배경	3. 6 인터넷 검색-전자정보자료실
2. 1 도서관 지적자유에의 연원	3. 7 기타-시설 및 프로그램제공
2. 2 도서관 지적자유에의 기본권적 기반	3. 8 도서관의 지적자유 관련 판례 분석
2. 3 국내의 선행연구	4 결론 및 제언
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3. 1 자료선정의 자의적 기준-사서의 자기검열	

초 록

도서관 지적자유는 도서관 내외의 간섭과 규제를 반대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활동의 철학적 기본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운영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산하 20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지적자유에의 기본적 원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국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적 간섭과 규제의 실체는 물론, 내부적 무지와 타성에서 비롯하는 제약요인의 실체를 확인해 주었다. 결국 이것은 지적자유 원칙을 국내 공공도서관 활동의 기반이념으로 개발하려는 당초의 연구목적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여 주었다.

ABSTRACTS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attain general knowledge of intellectual freedom which provides the philosophical principle of our library activities. Also, this study seeks to develop the principle of intellectual freedom as the policy and guide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In order to research the operational circumstances of intellectual freedom in our public libraries, the researcher visited 20 public libraries in the Seoul district. The results clearly confirmed the self-censorship of the librarians in selecting materials. Also, it confirmed the reality of external interventions and restrictions as well as restrictive sources originating from internal ignorance and habitual practices in our public libraries. Ultimately, such results provided a solid basis for the aim of this study to develop intellectual freedom principle as the basic ideology for public library activities in Korea.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접수일자 2000년 3월 5일

1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도서관활동의 기본철학을 이루는 중심주제는 이용자봉사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한다. 그러나 국내외 공공도서관에서는 국가안보, 사회질서, 미풍양속 등의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자료선정과 이용에 대한 외부적 간섭과 규제는 물론, 내부적 무지와 타성에 의한 편향된 지침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기본철학을 제약하는 저해요인들 중에서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로운 도서관 활동을 제약하는 제반여건에 대한 국내 공공도서관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 조사결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활동의 지적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만 지적자유에 이론적 원형이 구미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구체화된 이념이기 때문에 논의의 준거가 다소 국내현실과 괴리되는 점이 없지 않지만,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도서관 활동의 정체성 정립이라는 보편적 이념에 부합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운영의 기본정책과 운영지침들을 보다 이용자 지향적으로 구축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공헌하는 정보와 사상의 광장으로 자리잡는데 유용한 이론적 토양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1. 2 연구방법과 제한점

이 연구의 방법은 기술적(記述的) 표현의 객관성을 위해 사례연구의 질적 분석을 위주로 하면서 통계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가설을 세워 통계적 분석으로 이를 검증하는 식의 단일 현상에 대한 계량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배경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갖는 대안으로서 질적 분석과 계량적 표현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1999년 6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2개월에 걸쳐 서울시 교육청 산하 21개 공공도서관중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20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자료봉사와장과의 면접과 자료봉사와 내 실무사서에 대한 서면질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지역적 한계를 갖는다. 다만 일반적인 사회문화 환경에서 서울이 갖는 지역적 대표성이 공공도서관에도 원용되어, 전국적 실태에 대한 간접적 준거로서 지방의 실태에 접근하는 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1. 3 용어정의

지적자유

일반적 의미로서 지적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적 개념과 관련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부의 권력적 개입, 즉 사상의 전달매체로서의 출판물에 대한 검열에 저항하

는 것을 동기로 하고 있다. 다만 지적자유는 이러한 기본권적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각종의 사법적 혹은 사회적 압력의 침예한 형식으로서 출판물에 대한 검열문제에서 출발점을 이루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지적자유는 단순한 문헌매체에 대한 검열문제를 넘어서 자유로운 사상과 지식의 유통을 제약하는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제약에 저항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도서관현상에 적용된 지적자유 개념은 도서관이 소장한 혹은 소장하려고 하는 문헌에 대한 검열에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근래는 도서관활동 전반의 정체성, 즉 도서관의 기본철학인 이용자의 자유로운 자료접근의 이념을 훼손하는 모든 제한적 규제와 외부적 개입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ALA OIF 1996, xix-xx).

결국 도서관의 지적자유란 이용자가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활동의 원리를 말하거나 혹은 도서관활동 전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대응하는 자율성을 말하기도 한다.

검열

일반적으로 검열은 정치, 종교, 풍속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료에 대해 제작, 배포, 유통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검열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유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개별 사상의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 제한적인 규제를 가하고 자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사상 및 표현의 제한을 강조하는 의미로, 비민주적인 제도적 사상통제라는 역기능성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제한된 예산, 이용자 요구 및 장서구성 정책 등으로 인해 사서들로 하여금 일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료선택의 판단을 요구하게 되고, 이때 사회의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유무형의 검열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검열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검열은 “자료이용에 대한 금지(ban), 방해(prohibit), 은폐(suppress), 배격(proscribe), 제거(remove), 레이블링(labeling) 등은 물론 자료의 일부를 삭제(deletion), 절단(excision)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일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여 매우 광의의 해석을 채택하고 있다 (ALA OIF 1996, xx).

결국 도서관에서 검열의 의미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적 도서관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2 도서관 지적자유 의 이론적 배경

2.1 도서관 지적자유 의 연원

공공도서관은 어느 일부 구성원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체내에 포함된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수에 의해 배척되는 소수의 의견까지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이 견지해야 할 지적자유 의 원칙이다. 표현의 자유에 의해 확보된 모든 사상의 표현에 대한 공동광장의 역할이 바로 공

공도서관의 기능이 된다.

지적자유 이론적 원형은 1930년대 미국에 서의 잇단 검열사건에 대한 사서들의 반대입 장을 공론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롯하고 있으나, 1948년 ‘도서관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 이후 사서들의 공정한 자료수집 및 제공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곧 이용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아래 사서와 도서관 자체의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진전되어 결국 이용자와 도서관활동 전반에 대한 도서관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오늘날 반검열적인 지적자유 원리는 기본 권적인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는 도서관의 역할, 그리고 알자유와 접근권 등을 보장하는 민주적 광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1999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도서관연맹(IFLA) 집행이사회에서 도서관활동의 기본 원리로서 지적자유 원리를 채택하여 전세계 모든 도서관들이 이를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하는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성명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으로 천명하였다.

2. 2 도서관지적자유 기본권적 기반

도서관의 지적자유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사상과 정보유통의 광장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상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각종의 개입과 규제를 입법으로 지원하였던 과거의 검열에 대한 저항행위에서 출발한 도서관 이념으로서, 왜 도서관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배경적 철학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도서관은 이용자 모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 정보자료 수집과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일 도서관이 자기규제에 의해 자료수집과 제공의 역할을 소홀히 한

〈표 1〉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선언 : 정책(ALA, Library Bill of Rights: The Policy)

미국도서관협회는, 모든 도서관이 정보와 사상의 광장이며, 아래의 기본방침이 모든 도서관봉사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 I. 도서와 기타의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의 관심·정보·계몽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자료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의 혈통, 경력, 견해를 이유로 자료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 II. 도서관은 최근 및 역사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표현된 모든 견해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당파 혹은 교리상의 반대를 이유로 자료가 금지되거나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 III. 도서관은 정보와 계몽을 제공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열을 거부해야 한다.
- IV. 도서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접근을 제한하는 것에 저항하는 모든 개인 및 집단과 협력해야 한다.
- V. 개인의 도서관 이용권리는, 그들의 출생, 연령, 경력, 견해 등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 VI. 전시공간과 집회실을 봉사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은, 시설이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신념과 소속에 관계없이 공평한 기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ALA 평의회 1948.6.18 채택, 1961.2.2, 1967.6.27, 1980.1.23. 수정, 1996.1.23. 재확인)

참고) <http://www.ala.org/work/freedom/lbr.html>

때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도서관 이용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엄남이 1992).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선언문에서 도서관의 개념을 '정보와 사상의 광장'으로서 표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정보공개제도의 전달경로로서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선의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전통적인 인쇄매체를 통한 역할에서 견지되었던 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입장이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 환경에서도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에서의 인터넷이용에 대한 입장 특히 여과(filtering)와 관련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정책문으로 천명하고 이를 통해 통신네트워크상의 지적자유에 대한 도서관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3 국내외 선행연구

도서관 지적자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논고가 우리나라 도서관계 정기간행물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미국의 '도서관관리선언'이 번역되어 소개된 1978년의 일이다.

이후 광동철(1986)은 석사학위논문에서 일제하의 도서검열정책과 검열도서의 조사를 통해 일제하 도서관의 사상선도기능의 폐해를 지적하고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광장으로서 도서관 지적자유를 부각하려 하였다. 또한 엄남이(1992)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관련 정보공개제도에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용자의 알권리와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를 공공도서관 활동의 근

거로 제시하며 기반철학으로서의 이해를 확장하였다.

한편 사서의 윤리문제를 통해 사서직무와 관련된 자료검열과 이용자 비밀보장 문제를 거론한 논문들이 그나마 지적자유에 근접한 문제의식을 표현하였다. 김혜선(1994)은 석사학위논문에서 국내 수도권지역 정사서 186명을 설문조사하여 이용자의 사생활권 보장과 사서의 중립성 유지를 제안하며 자료 선정기준의 명문화화를 통한 이용자의 지적자유 보장 문제를 강조하였다. 또한 손연옥(1996)은 전문사서의 윤리문제를 도서관 업무별로 제기하고, 특히 선정업무에서의 검열문제와 대출업무에서의 이용자 비밀보장을 윤리문제의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김영기(1999)가 박사학위논문에서 부산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현장에서의 자료선정, 열람 및 장서관리 등에서 광범위하게 온존하고 있던 편향된 검열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장서형성에 반영된 사회사적 단면들의 인과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문제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도서관활동의 주요 기반이념으로 발전시켜 온 나라가 미국이기에, 이들의 선행연구는 여타 나라에서 유용한 접근점으로 인용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의 검열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연구의 효시를 이루는 중요한 선행연구는 피스케(M. Fiske 1959)의 연구이다. 그는 캘리포니아지역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사서 및 사무직원 204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선정업무과정에서의 자기검열(self-censorship) 현상을 발견하고, 지적자유 개념에 대한 이해

가 곧바로 실제의 업무과정에서 지적자유에 우호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부사(C. Busha 1970)는 미국 증서부 5개 주(州) 900여명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사회에서의 자유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태도와 검열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여부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혀 내었다.

로빈스(L.S. Robbins 1996)는 도서관 활동의 정책적 변화와 관련해서 1939년부터 1969년까지의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적자유에 대한 정책 활동을 2차대전시기(1939-1948), 매카시선풍기(1948-1952), 시민권운동기(1952-1960), 반전운동기(1960-1969) 등의 네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 후, 지적자유 원칙이 어떻게 미국 도서관 활동의 기반철학으로 자리잡았는가를 주요 사건의 연대기적 분석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최근 니오시(Niosi 1998)는 남부 캘리포니아 5개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구체적 선정정책의 명문화만이 지적자유에 대한 수호역할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연구업적은 무엇보다도 미국도서관협회내에 설치된 지적자유 사무국에서 발행한 {지적자유 편람}(Intellectual Freedom Manual)을 들 수 있다. 1974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 1996년에 제5판까지 나온 이 간행된 편람에서는 그간의 도서관 권리선언과 관련한 역사적 해설과 함께 각종의 선언과 정책, 해설 등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검열에 대한 현장에서의 법률적, 실천적 대처방안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적자유에 관한 중요한 서지적 성과로는 도서관의 지적자유와 검열 관련 서지를 작성하여 일일이 주석을 단 호프만(F. Hoffman 1989)의 저서를 들 수 있다. 한편 쉬라드바이러(C. Schladweiler 1996)의 “도서관 권리선언과 지적자유에 대한 선정적 서지” ([Library Trends] 1996년 여름호)에는 그간의 관련 연구성과들이 관중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한편 도서관의 지적자유 문제에 대해 비교적 일찍이 관심을 보였던 일본은 자국의 도서관 현장실태를 반영한 연구보다는 미국의 지적자유 관련 연구성과를 번역하여 소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탁월한 서론적 입문서로 시오미 노보루(鹽見昇 1991)의 {지적자유와 도서관}, 반바 도시야끼(馬場俊明 1993)의 {자유선언과 도서관활동}을 비롯하여, 미국의 지적자유 동향을 통찰하여 해석하고 있는 가와사키 요시타카(川崎良孝 1991, 1997)의 논문들이 있다. 또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조사위원회’에서 그간 간행한 ‘도서관과 자유총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3.1 자료선정의 자의적 기준 - 사서의 자기검열

일반적으로 사서들은 자료선정에 반영하여

야 할 긍정적 가치와 배제하여야 할 부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잠재적으로 의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양면적 가치관의 모순이 심각할수록, 사서들은 자료선정과 정에서 검열시비에 대한 비난을 우려하면서도 현실상의 명분을 이유로 자신의 주관적 검열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Busha 1972). 공공도서관 수집자료에 대한 검열과 관련하여 지적자유를 해치는 최대의 장애는 내부의 검열자, 즉 사서 자신들에 의해 무의식중 행해지는 자기검열(self-censorship)이라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는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Asheim 1953).

사실상 사법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는 모든 문헌은 그 내용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의해 거부되어 질 수 없는 표현물로서의 접근권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자료로서 어떤 자료도 검열에 의해 배제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도서관 자료에 대한 반검열적 윤리의 기본 논거이다.

본 연구에서 행한 현장사서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도 역시 문제도서의 검열에 일차적 관권을 쥐고 있는 실무담당 사서들의 자기검열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사서들의 검열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뒤의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자료선정에서 검열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계도성을 강조한 [의견1]과 제한적 이용을 강조한 [의견 2] 등에 압도적인 동의를 보인 반면, 이용자의 판단을 강조한 [의견3]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 이점은 사서들이 도서관 자료와 이용자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표 2> 검열에 대한 태도조사 결과

	[의견 1] 사회를 계도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구입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	[의견 2] 선별 구입하되, 별 치하여 성인이나 연구목적 등으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의견 3] 자료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에게 맡기고, 이용자가 원한다면 구입제공해야 한다.	<계>
정치적 주제 (노동신문, 주체사상총서 김일성회고록, 남한체제비판)	4명(20%)	15명(75%)	1명(5%)	20명(100%)
종교적 주제 (종말론, 사이버종교이론서 신비주의, 특정종교비판서)	8명(40%)	7명(35%)	5명(25%)	20명(100%)
사회문화적 주제 (동성애, 노골적 성표현 근친상간, 육설표현)	13명(65%)	5명(25%)	2명(10%)	20명(100%)
	25명(42%)	27명(45%)	8명(13%)	60명(100%)

잠재적 자기검열의 가능성을 매우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검열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석하면서 주목되는 점은 과거 도서관 현장에서 자료선정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이념자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사서들이 정치적 주제보다는 종교적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 주제보다는 사회문화 주제에 대해서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1980년대까지 사서들의 자기검열 대상이 주로 금서로 표현되는 이념도서였다면, 1990년대 이후 자기검열의 대상은 반사회적 가치로 표현되는 유해 음란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및 사회안전의 정치적 논의에 대한 검열은 어느 정도 체제적 안정성이 확인되고 나면 사회윤리에 대한 검열로 그 비중이 넘어간다는 통상적인 검열현상에 대한 경험적 이론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3, 126).

최근까지 우리나라 사서들의 선정업무에서 부담으로 지속되었던 이념도서에 대한 자기검열 사례는 면접에 응한 사서들 대부분의 경험으로 <사례 1>과 같이 확인되었다.

<사례 1> 1970, 80년대 공공도서관에서의 이념도서에 대한 자진제거 증언

면접조사에 응한 사서들 모두는, 1980년대 이전 근무현장에서 공공연하였던 이념도서에 대한 검열과 자진제거 사실을 증언하였다. 1970년대에는 이념관련 서적에 대한 통제가 엄격했던 때라 이를 구입하거나 비치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만 시국사건으

로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념성이 확인된 자료에 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적표현물이란 판정이 내려진 경우 이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공안수사관들이 자료를 무단 압수해 가거나 이러한 이념자료를 제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대부분 전화상으로 관련자료에 대한 문의나 제거를 지시해 왔다고 한다. 특별히 불온성이 인정되는 이념자료에 대한 도서관의 소장이 허용된 것은, 안기부로부터 불온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제한된 수의 도서관에서만 가능하였고, 그 또한 엄격히 이용을 통제하며 유지하여야 했다.

1980년대의 경우 특히 제5공화국 시기에는 문화공보부 간행물심의실에서 직접 이념도서에 대한 납본심의를 통해 판정한 판매금지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출판제작단계는 물론 판매 등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의 사법적 단속을 행사하였으나 실제 공공도서관에 직접 폐기나 별치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이 하달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금서목록 등이 언론에 발표되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들 금서목록을 확인하는 대로 별치하거나 등록자료에서 제거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진 폐기하는 것이 최선책이었다. 모두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서울시교육청이나 문화공보부, 혹은 공안기구에서 이념도서를 명기하여 도서관에서 제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온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도움: N도서관 K지방사서주사, D도서관 L지방사서서기관, S도서관 K지방사서사무관, K1도서관 K지방사서사무관, K2도서관 K지방사서주사, K3도서관 H지방사서주사 외)

1980년대 이전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공공연하였던 이념자료에 대한 기피현상은, 김영기의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장서형성과정

을 다룬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검열현상의 사실적 개연성만을 제시하였다(김영기 1999). 다만 이러한 검열사실에 대해서 사서들 모두가 경험상의 사실을 들어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물증의 부재를 이유로 검열현상의 존재 사실을 의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물증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사건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한다.

사서들 모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듯이, 도서관 자료에 대한 외부의 공식적인 검열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이념도서에 대한 제거를 지시하는 감독관청의 문서상 지시를 정확히 증언하는 이도 없었다. 다만 언론에 기사화된 이념도서에 대한 금서목록을 참고하여, 불필요하게 이념문제에 연루될 것을 우려한 도서관측이 자발적으로 제거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내부문서로서 이념도서목록이 공람되거나 결재되는 절차상의 문서작업이 증언되고 있을 뿐이다.

3. 2 자료선정의 사회적 기준 - 금서와 추천도서

자료선정의 객관적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장사서들은 자신들의 자료선정업무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자료수집 기준으로 참고하는 도서관 외부의 사회적 가치기준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우선 도서관 외부에서 사서에게 직접적인 채택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력한 사회기관 및 단체의 각종 추천도서와 권장도서 등을 영향력 있는 선정기준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도서관 밖에서 사서에게 이념

도서나 풍속물 등의 간접적인 제외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서나 음란물에 대한 정부의 사법적 판단기준을 중요한 가치기준으로서 지적하였다. 한편 청소년 유해도서에 대한 보수적 선정기준을 강조하는 교육청의 지도감독 또한 도서관 외부에서 사서에게 협의적 배제기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도서관 자료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가치기준으로서 지목되었다.

이렇게 자료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세가지 외부 가치기준 가운데 첫 번째로 지목된 것이 유력한 사회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추천 및 권장도서 목록이다. 현장에서 만나 본 사서들은, 사회적으로 검증된 자료라는 의미에서 관변기관이나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거론하는 각종의 추천도서와 권장도서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집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방문조사한 J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서는 “3)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교육부, 기타 권위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외부의 추천도서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현장사서들의 자료선정업무에 간접적 선별기준을 제공하는 가장 비중있는 외부적 가치기준은, 금서와 음란물에 대한 정부의 사법적 단속기준을 지적하고 있다. 이념자료에 대한 사법적 단속기준은 이미 과거 유신시대나 제5공화국 시기의 검열 과정에서 충분히 법률적 유효성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단속기준이 헌법상에 보장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재산권 보장과 자유경제 질서원칙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선별기준은 되지 못하

였다.

사서들이 자료선정업무를 제약하는 외부적 가치기준으로 지목한 또 한가지는 공공도서관의 교육청 소속문제였다. 거의 대부분 공공도서관이 기존의 교육청과 시설을 함께 쓰거나 인접한 부지 혹은 관할 초중고교와 담장을 함께하고 있으며, 인사권한과 예산권한 역시 교육청에 귀속되어 있고, 이들 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정책은 교육청의 지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부 명칭을 변경한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공도서관은 교육시설의 한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이용의 적지 않은 부분을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수집의 방침이 교육적 목적을 배려한 계도적 견지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교육적 여건이 더욱 장서개발에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약환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많은 사서들이 지적하였다.

〈사례 2〉 전교조발간 교육자료선정에 대한 교육청의 질책

S도서관 K과장의 경험에 의하면, 1992년 전근무지인 Y도서관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의 신착도서란에 전교조에서 발간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시리즈 202번 {책마을로 가는 징검다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임 - 서울 : 돌베개, 1992.‘란 책을 양서로 소개한 적이 있었다. 며칠 후 관할 교육청에서 교육부 권장도서도 많은데 왜 전교조 간행자료를 소개했느냐는 질책성 전화를 받았다.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전교조를 불법조직으로 간주하여 적대시하던 상황이라 발간된 소식지 중 남은 것은 폐기하고, 문제의 {책마을로 가는 징검다리}는 열람자료에서 빼내어 별치 관리하였

다. K과장의 진술과 이를 확인하는 다른 도서관 과장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의 일부 도서관에서 수집자료중 전교조 관련 참고육 자료가 몇 권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도움: S도서관 K지방사서사무관)

위 사례와 같이 교육청소속 문제는 공공도서관의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요인으로 청소년 이용자 위주의 장서개발을 독려함으로써 개방적인 장서구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청소년 기본법’(1997.3.7제정 법률 제5297호)에 의하여 음란물로 대표되는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용 간행물로 판정된 도서에 대한 청소년 이용제한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여건상 성인자료와 청소년자료의 구분운영이 어려운 공공도서관에 있어 결국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이들 성인용 자료에 대한 구입이 적극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성인과 청소년 모두의 정보 접근권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 3 청소년에 대한 이용제한 - 유해도서 별치관리

서울시 20개 공공도서관의 자료봉사과장들과 면접과정에서 확인된 바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자료를 부분적으로 별치 보관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무려 13개관(65%)에 이

르렸고, 많은 곳은 63권에서 적은 곳은 한두 권을 별치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자료 봉사과 직원들에게 실시한 서면응답에서 '중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별치자료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6개관(30%)만이 유해자료의 별치 사실을 응답한 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서면응답과 면접응답과의 차이는, 도서관 직원들이 비공식적으로 별치 보관하고 있는 유해성 자료의 존재여부를 외부에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의 도서관에서는 별치 보관하고 있는 유해성 자료를 직접 확인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다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자료를 이용시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관리상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이용규정의 원형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도서열람규칙' (교육규칙 제110호, 1976.5.6제정, 교육규칙 제492호, 1996.3.20개정) 제4조(대출) 제2항에서는 "관장은 학생인 열람자가 청구한 도서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청소년에 대한 자료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실제로 'S도서관 이용 및 자료열람 내부규정'에서는 제8조(열람) 제2항 "열람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제7조(대출제한도서) 제4항 "기타 신청인의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명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대출제한은 물론 내부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은, 모든 도서관의 이용내규에 마련되어 있으

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도서관 역시 유해성 자료에 대한 대출제한 및 자료별치 등의 이용제한을 실시하고 있었다.

〈사례 3〉 K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 별치 관리중인
청소년 유해자료

K도서관에서는 입수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 중, 개가식 서가에 배치하였을 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별도 관리하고 있었다. 몇 년 전에는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랑}등을 서가에서 빼내 따로 보관하기도 하였다. 현재도 중고등학생들이 지나치게 호기심을 보이는 임신출산 관련 성교육자료라거나, 예술작품으로 출간되었다지만 너무 야한 사진들이 실린 화보와, 담당사서가 봐서 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등은 사서가 감시할 수 있는 맞은편 서가의 하단에 잠금장치를 해서 별도관리하고 있었다. (1999년 7월21일 현재 모두63종; 도움: K도서관 K지방사서주사)

- 미시족 Y의 외출 /양은영 지음. - 서울 : 실천문학사, 1996.
- 에로판타지아 1,2 /밀란 쿤데라 지음; 이동진 역음. - 서울 : 문학수첩, 1996.
- 창녀론 /김완섭. -서울: 천마. 1996.
- 동아 국제사진전 살롱, 제27회 - 서울 : 동아일보사, 1992.
- 조각감상의 길잡이 /데이비드 핀 지음; 김숙,이 지현 공역. - 서울 : 시공사, 1993.
- 여성의학사전 /마스야마 에이키치 지음; 홍유선 옮김. - 서울 : 열린사회, 1998.
- 부부의 밀어 /최정자 역음. - 서울 : 박우사, 1995.
- 성의 기원 /김학현 지음. - 서울 : 민음사, 1996.

- 강간총동 /도미니크 달레락 지음; 하태환 역. - 서울 : 동심원, 1995.
- 금지된 본능 /존 파울즈 지음; 편집부 역. - 서울 : 시인과 촌장, 1995.
- 우리아이들의 성교육 어떻게 할까? /이화연 지음. - 서울 : 돌베개, 1991.
- ... 외 50종

서울시 교육청 산하 20개 공공도서관에서 확인한 별치 자료의 내용은 주로 노골적인 성애 소설류와 성문제를 다룬 신변잡기류, 성교육 자료, 전위 사진집, 일부 참고교육관련 전교조 자료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에 대한 별치는 전적으로 열람실 담당사서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사서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도서들을 골라 별치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 열람현장에서 확인한 별치 자료들을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 첫째, 제목만 보고 구입하였더니 저속한 음란 표현물인 경우,
- 둘째, 이미 열람봉사 중인 자료가 사회의 음란성 시비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셋째, 교육적 목적으로 들여온 임신출산, 성교육 관련 자료들 중 사실적인 묘사로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호기심을 보이는 자료,
- 넷째, 책에 실린 사진을 자주 오려가는 누드 사진집이나 화보류,
- 다섯째, 사서의 개인적 판단으로 내용상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도서를 별도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판지일보} 조성기의 {욕망의 오감도}, 마광수 {자궁속으로}, PC통신문화연구회의 {내가 야한 얘기 하나 해줄까?} 등 개인적 주관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해 상당한 견해의 편차를 보일 수 있는 도서들이 적지 않았다.

한편 공공도서관에서의 청소년 유해도서에 대한 자기검열 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음란물 자료에 대한 선별적 이용제한을 목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별치관리를 시행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례 4〉 국립중앙도서관 비분도서관자료 취급규정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난 1969년부터 1995년까지 일반 열람자에게 공개하기에 문제가 있는 도서관자료에 대해 별도로 취급 관리할 수 있는 비분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었다. 도서관의 선정의지외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도서에 대해 납본을 받다보니,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이용자에게 부적합한 유해도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비분자료규정을 마련한 이유였다. '국립중앙도서관 비분도서관자료 취급규정'(1969.3.26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12호)에서 언급된 자료는 제2조 (정의)에서 "①대외비로 표시된 자료, ②발행처로부터 열람제한이 요구된 자료, ③국민생활의 미풍양속을 해롭게 할 내용의 자료, ④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한해 수서과에서 관장의 결재를 받아 비분납인을 한 후 별치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도움: 국립중앙도서관 L사서사무관)

지난 1995년에 도서관측이 비분도서관자료 취급규정을 재검토한 결과, 상기 ①항은 불온도서로 지칭되는 이념자료에 대한 별도의 특

수자료 취급지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②항에 해당하는 자료 또한 당시 입법이 예고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여부는 발행처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으므로 이미 입수한 이들 두 부류의 비본도서관자료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③항과 ④항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주로 음란성 표현으로 문제가 있는 풍속도서만이 이 규정에 해당되게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측은 첫째, 자관에서는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어 성인만이 이용가능하고, 둘째, 비본도서관자료에 대한 열람제한이 자칫 자료이용에 대한 접근권 침해 논란의 소지도 있으며, 셋째, 사법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음란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저작자의 이의제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규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비본도서관자료에 대한 일반공개를 위해 재배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1999년 7월 현재 필자가 확인한 바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조직과 창고에 보관중인 약 120종의 자료는 대부분 음란물의 요건을 다수 구비한 누드 사진집과 성희장면의 가판 화보집, 성애소설, 성인만화, 노골적 성교육자료 등으로 일반공개를 위해 재분류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도서관 자료로서의 가치보다는 저작자와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시비를 피하고 이용자의 자료접근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적 측면에서 단행된 소극적 조치이기 때문인지, 일반서가에 재배치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 그 동안 몇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창고에서만 보관된 채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3. 4 이념자료의 열람제한 - 특수자료실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북한원전을 비롯한 이념서적을 자료로서 제공하는 것이 일부 제한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에서 이적표현물에 대한 금지와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 5〉 북한자료에 대한 이용제한 : 특수자료실.

현재 북한원전을 포함한 이념자료는 1970년 제정된 '특수자료 취급지침' (개정 1988.9.1)에 따라 도서관현장에서 대출·복사 등의 일반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국내에서 통일원 북한자료교류협의회 회원으로서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은 기관은 1999년 현재 모두 173개관으로, 그 중 공공도서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도서관 1곳씩을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13개관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 지역대표 공공도서관은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북한원전을 비롯한 각종의 반국가적 이념서적을 이관받아 합법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움: 북한자료센터)

공식적으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념성 여부의 판단은, 각종 보안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리결과에 의해 '이적표현물'로서 판정된 후, 이를 소급 적용하고 있지만, 도서관 현장에서 이념자료의 성격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면서, 국가에 불온한 사상을 표현하는 불온도서라 하여 매우 배타적으로 처리해 왔다. 최근까지도 이들 이념자료는 출판단계에서부터 납본제도와 검열과정을 통해 공식적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금서'로서 취급되어 도서관 자료로서 편입되는 것이 원

천적으로 제한되었으며, 간혹 입수되었다 하더라도 의도적인 격리와 통제를 통해 일반에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피하였다. 이러한 기피현상은 사서들이 공무원 신분의식을 우선하여, 사서라는 전문직의 윤리의식까지도 망각하며, 스스로 사서임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도서관에서 이념자료에 대해 제한된 열람을 제도화하였던 것은 현실적인 학문수요와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자 1970년 도서관에 '불온자료실'을 설치 운영하면서부터이다. 초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소수 관변 연구기관에 인가되던 것이 1980년대 이후 사회 경제적 성장과 실용적 수요를 반영하면서 1999년 현재 173개 취급인가기관에 확대 설치되었다. 특수자료 열람제한은 1988년 7.7선언의 후속조치와 1990년대 냉전해체와 더불어 해당자료에 대한 대폭적인 해제작업을 거치면서 근년에는 이적성이 현저한 북한의 정치사상관련 도서만을 대상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자료에 대한 분류기준은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의 사정, 혹은 정권 책략에 따라 다른 의미와 해석이 요구되었으며, 도서관 현장마다 특수자료 분류기준을 일관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기준은 정치적인 상황논리에 좌우된다고 하

여 입법의 실효성과 기본적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수자료 역시 이적표현물의 일관된 사법적 분류기준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도서관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잠재적 검열이라는 이면의 부작용이 뒤따르게 되고, 따라서 전반적인 정보이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저해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5 이용기록 관리 - 이용자 비밀보호

지난 199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19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의 제14조(정보공개방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1994.1.7, 법률 제4734호)의 제23조에서는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공도서관의 이용기록은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우편, 전화 등의 개인정보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기록으로 사생활권 보장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표 3〉 특수자료취급 세부시행규칙, 제5조(특수자료의 분류기준)

-
1.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발행한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 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선동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

개인의 사생활기록에 대한 공개나 열람은 사법적 요건을 갖춘 후에 가능하고, 따라서 경찰을 비롯한 법률집행기관도 개인의 사생활기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필요를 입증하여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후에나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례6〉 경기지방경찰청의 한총련조직원 검거를 위한 도서관기록 확인요청.

1998년 9월 경기지방 경찰청장은 당시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그 활동을 규제하고 있던 '한국대학생총연합회' 일명 한총련의 조직활동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21개 공공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열람과장 참조사항으로 도서관의 열람, 대출, 회원가입 여부 등의 도서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문서번호: 보인63740-xxxx) 당시 경기지방 경찰청은 한총련 조직원으로 수배자들의 일부가 공공도서관을 자료 이용과 은신처로서 조직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근거로 수사상의 목적을 위해 도서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실제 시내 공공도서관 중 수배자의 주소지 소재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수배자의 도서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를 위한 잠복근무를 하는 등, 제한적인 수사대상이 되었다.

K도서관의 경우 1998년 9월 수사관이 찾아와서 수배자 3-4명의 대출관련기록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해와 확인해 본 결과, 대출회원명단이나 기타 이용관련 기록에 해당자가 없었다. 담당자와 부서 과장이 이에 협조하였으며, 사실 도서관 기록이라야 대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대출 책에 대한 내용이 전부라서 문제될 것이 없었고, 공무원으로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되어 협조하였다고 하였다.

D도서관의 경우에도 경기도 경찰청 산하 모 경찰

서에서 한 운동권학생의 도서대출과정에 대한 경위를 묻고 관련도서를 압수해 갔다. 수사관들은 압수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물론 내부적으로도 담당자 및 과장의 결정으로 경찰업무에 협조한 후, 이 사건과 관련한 간단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N도서관의 경우도 1998년 9월초 수사관들이 신분을 밝힌 후, 수사대상 여학생의 대출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도서관측은 해당 대출기록을 출력하여 제공하였다.

면접대상 사서들이 모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사건의 공개를 꺼려하였고, 단지 3명의 사서만이 매우 제한적인 내용으로 수사협력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나머지 사서는 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도움: K도서관 L지방사서사무관, D도서관 L지방사서주사, N도서관 K지방사서주사)

위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사협조에 응한 사서들의 태도이다. 기록 유출에 따른 이용자의 사생활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배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절차상 사건의 요지를 담은 협조 공문만으로 협조의 근거를 삼고 있고, 처리 후 기록유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서관에서의 이용기록 유출은 면접조사 과정에서 몇몇 사서들의 개인적 경험을 빌어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수년에 한두 차례 극히 일부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응답사서 모두가 수사상의 협조를 요구받았을 때, 수사상의 목적과 신분을 확인한 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95년 일본에서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한 동경경찰청의 이용기록 열람협조 요청에 대한 일본국회도서관측의 대응을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기록은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당시 일본국회도서관은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사건 종료 후에는 이러한 사실을 정당히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사회단체 일각으로부터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기록을 유출한 것에 대해 비난받았다.

현실적으로 현안 처리에 급급한 열악한 업무조건을 고려한다면, 이용자 비밀보호를 위한 장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지나치게 상세한 이용기록 유지를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권 보호목적에서 신중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도록 간단한 교육과 함께, 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상의 요건에 따라 이용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이용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기록 공개요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도서관협회나 타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개적인 대응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긴요한 대책이 되겠다.

3. 6 인터넷 검색 - 전자정보자료실

서울시내 공공도서관들은 1998년 부터 전자정보자료실 내에 인터넷검색용 PC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식은 대기자가 있을 경우 한시간을 제한시간으로 배정하고,

간단한 기록만으로 자리를 배정받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사서는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이용을 돕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유해 음란물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내용을 확인하는 일도 하고 있다.

〈사례 7〉 S도서관에서의 인터넷 검색제한에 대한 항의.

1999년 4월 S도서관의 전자정보실에서 40대 초반의 남자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이용을 감시하던 사서에게 적발되어 주의를 받았다. 이에 이용자는 사서가 성인이용자의 검색내용을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검색이용을 간섭할 수 있는 근거 법규를 제시하려고 항의하였다. 결국 사서와 이용자간에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권 문제를 두고 감론을박하다가, 이용자는 정보이용을 간섭하는 도서관을 시민단체 등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이후로 다시 찾지 않았다. (도움: S도서관 K지방사서사무원)

서울시 공공도서관들은 전자정보자료실에 설치된 인터넷 검색용 PC에 1998년 한국전산원에서 개발한 유해 음란물 여과(filtering)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음란물 접속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로 인터넷 이용에 장애를 일으키자,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여과프로그램을 제거한 후, 검색용PC를 직원이 감시하기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20개관의 전산정보자료실 운영실정은 거의 동일하였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용자의 인터넷이용에 대한 제한은 각주마다 실정을 달리한다. 보수

적인 분위기의 주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해 음란물 사이트의 인터넷 검색을 제한하기 위해 여과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하면, 다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주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장려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을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미국도서관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제약하는 여과프로그램의 설치나 직원의 간섭을 금하고 있으며, 실제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사생활권 침해를 우려하여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쉽게 검색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말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 차단을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가 여과프로그램의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음란물 규제를 이유로 건전한 시민의 정보이용을 규제하는 정보검열이라고 비판하며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선진국의 추세는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의 음란물 여과프로그램설치권장되고 있지만, 일반 성인에 대한 음란물 규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검열의 논란소지가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과프로그램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에서의 인터넷 검색 제공이 초기

단계이고 사실 인터넷 게임방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 검색을 제한하려 할 때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사전에 충분한 공청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에 따른 이용자들과의 마찰에 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3. 7 기타 - 시설 및 프로그램제공

전국적으로 문화·교육관련 프로그램은 다섯가지 이상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이 270개관 중 123개관(45%)에 이를 정도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문화관광부 1998, 43). 특히 일부 평생교육관으로 변신한 공공도서관에서 새로운 사회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현실적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대두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금, 아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외부 관련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의의제기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대처요령과 법적 근거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범위와 성격, 목적 등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명분과 원칙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천명할 것이 요망된다.

〈사례 8〉 K도서관에서의 비디오상영에 대한 대역업자의 항의.

1996년 가을 K도서관에서는 인근지역 비디오 대역업자로부터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 비디오 대역업

이나 비디오물 감상실업 등의 사업은 문화관광부나 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자에 한하며, 대여용으로 보급된 출시비디오는 병원, 터미널 등 공중이용장소에서는 무단상영하지 못한다는 법규정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공중에게 상영하는 것은 비디오관련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이면은 공공도서관에서의 비디오 상영으로 인해 인근 대여업자들이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도서관측은 비디오상영이 도서관이용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적 부가봉사일 뿐이며, 비영리적 목적에서 무료 상영되고 있음을 들어, 비디오관련법상의 처벌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대여업자들에게 이를 설명하였다. 이들도 정당한 대항논거가 확인되지 않자, 도서관측에 신규출시프로의 상영을 자제해 줄 것과 상영 횟수를 줄여 줄 것 등을 요청하는 선에서 항의를 거두었다. (도움: K도서관 H지방 사서주사, K2도서관 K지방사서주사)

본 사례에서 비디오대여업자들이 주장한 비디오관련법이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정 1999.2.8, 법률 제5925호, 종전의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동 법 제2조(정의)에서 제시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자'로서 정의된 '비디오물 대여업자'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문화관광부장관과 자치단체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디오물 대여업자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등은, 비디오물을 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얻고자 하는 사업자를 규정한 것으로, 비영리적 상영을 목적으

로 하는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원 등의 무료상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8 도서관의 지적자유 관련 판례분석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결을 받은 사례로는, (주)무한정보통신이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KOLIS)를 검색하여 찾아낸 2건의 대법원 판결요지이다. 지적자유 문제는 모든 도서관에 해당하는 기본원리라는 점에서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적용되었던 법원의 판결사례를 인용하였다.

〈사례 9〉 충북 S중학교 도서실자료 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1990년 충청북도 S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L씨는, 이적표현물로 판시된 {한국민중사 1}, {아리랑 2},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러시아혁명사}, {미완의 귀향일기}, {제주민중항쟁 1,2}의 책자를 학교도서실에 보관하며 탐독하였기에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어 국가보안법위반을 판결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도서실에 보관중인 위 책들에 대해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탐독한 사실만으로 적에게 이롭게 할 목적이 있는 이적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 하에 하급법원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파기하였다. (대법원1992.4.14.선고 90도3001판결)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학문 및 사상의 자

유 등의 기본권 배려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다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도서관 자료에 있어서까지 이적행위를 적용한 하급법원의 무리한 법 적용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실상 헌법의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저변에 보편화된 이념에 대한 경직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올바른 현실인식에 대한 책임을 갖는 교사신분의 특수성은 물론 도서관 자료의 열람이라는 정황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하급심 파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판결의 요지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지 도서관에서 이념자료를 보아도 된다는 논리의 판결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국가보안법이 지속하는 한 이념자료에 대한 제한적 관리는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0〉 서울 S대학교 도서관대출자료의 탐독에 대한 반공법위반 사건.

1981년 서울 S대 경제학과 학생 이영수는 모리스 돕(Maurice Dobb)의 〈자본주의 발달연구〉와 루카치, 하버마스, 만델 등의 마르크스경제이론 저작물을 종로서적, 논장서점 등의 시내서점과 S대학교 도서관에서 구입하거나 대출받아 복사하여 탐독·보관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국외공산계열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 또는 복사하였다는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반공법 위반을 판결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가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로, 대학생이 학문연구를 위해 시내 일반서점과 대학도서관에

서 구입 또는 대출받아 보관한 연구자료가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사상과 가치체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반공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 1982.05.25선고 82도716판결)

이 사례는 앞의 중학교사의 학교도서관에서의 이적표현물 탐독사례와 달리, 학생의 학문연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이유로, 국가보안법(구 반공법) 위반의 법 적용을 파기하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대출받아 복사, 탐독한 행위에 대하여 반공법 위반을 적용한 하급심의 무리한 법 적용이 파기되었다지만,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 자료에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현실적 위협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서, 과거 공공도서관에서의 이념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자기검열적 배제행위의 불가피성을 원인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판례는 앞의 사례와 함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현실적 위협을 확인해 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추후 도서관 자료이용과 관련된 법 적용 사례에서는 도서관의 지적자유라는 기반이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권적 법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요청된다.

4 결론 및 제언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각종의 도서관 활동과 관련

한 지적자유 침해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지적자유 원리의 이해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자행되는 외부적 간섭과 규제 실체는 물론 내부적 무지와 타성에서 비롯하는 도서관 활동의 제약요인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적자유를 선양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앞선 나라의 국가적 차원의 정책제안을 참고하여, 도서관 지적자유를 우리나라 도서관 활동의 이념적 기반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으로 개발하기 위한 현안을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검열과 이용제한 관련 각종 법령과 내규는 보다 이용자 지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 외부 인사의 선정업무 참여, 표준적 업무편람의 작성, 실정법상의 관련법규 검토 작업, 이용자 대표 및 시민단체와의 사전협의 등을 실시함으로써 운영내규에 작용하는 관료적 편의주의를 희석하여 이용자 편의적인 봉사환경을 구축하는 계기로서 기대한다.

둘째, 활동조직의 정비를 통한 공공도서관

협의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하 공공도서관협의회의 사무국 기능을 상설화하여 당면하는 협의업무에 신속히 대처하고, 서울시도서관연구회와 같은 지부조직들과 민간연구인력간의 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셋째, 한국도서관협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서 자유로운 도서관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자유' 선언이 필요하다. 국제적 도서관 활동의 이념으로 추인된 지적자유 원리를 우리나라 도서관 활동의 기본이념으로 선언함으로써, 도서관 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책과 지침을 이러한 선언에 기반하여 검토할 것이 요청된다.

넷째,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신장을 위한 시민운동과의 협력방안으로서 어린이도서관연구회와 같은 우호적 시민단체와 연대사업을 확대하고, 도서관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시민운동단체와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엔지오(NGO)자료실을 설치하여 봉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1986. 일제치하의 도서검열과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영기. 1999.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장서형성의 사회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혜선. 1994. 사서직 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馬場俊明. 1993. 自由宣言と圖書館. 東京 : 青弓社.
- 손연옥. 1996. “도서관업무와 전문사서간의 윤리적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도서관논집, 제24집 : 485-515.
- 안창남. 1999.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정보공개운동”. 정보공개 청구운동 백서 1998.5 - 1999.5. 서울: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11-27.
- 엄남이. 1992. 정보공개제도실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鹽見昇. 1991. 知的自由の 圖書館. 東京: 青木書店.
- 이순자. 1990. “정보관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 도서관학, 제19집 : 23-61.
-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調査委員會. 1997.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事例33選. 圖書館と自由シリーズ, 第14集. 東京: 同協會.
- 川崎良孝. 1991. “1980年代のアメリカの圖書館と知的自由”. (1), (2), (3). 圖書館界, 42(6) : 336-343 ; 43(1) : 2-12 ; 43(2) : 104-116.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3. 외국의 간행물윤리제도. 서울: 동위원회.
- ALA Council. 1974. “Library Bill of Rights”. *Intellectual Freedom Manual*. Chicago : ALA. 한국어 역본 : 1978. “圖書館權利宣言”. 李炳穆 譯. 文獻情報學 研究, 1(2) : 2-3.
- ALA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1996. *Intellectual Freedom Manual, 5th ed.* Chicago: ALA.
- Asheim, L. 1953. “Not Censorship But Selection”. *Wilson Library Bulletin*, 28(1) : 63-67.
- Busha, C.H. 1972. *Freedom versus Suppression and Censorship*. Littleton : Libraries Unlimited.
- Curry, Ann. 1997. *The Limits of Tolerance: Censorship and Intellectual Freedom in Public Libraries*. Lanham: Scarecrow Press.
- Fiske, M. 1959. *Book Selection and Censorship*.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 Hoffman, F. 1989. *Intellectual Freedom and Censorship: An Annotated Bibliography*. London: The Scarecrow Press.
- Krug, J., and R.L. Funk. 1995. “Pressure Group vs. Library: Polices, Procedures, Public Relations as Defenses”. *Wiscon-*

- sin Library Bulletin*, 69(2) : 66-68.
- Lacy, D. 1986. "Commission on Freedom and Equality of Access to Information". *Freedom and Equality of Access to Information: A Report to the ALA*. Chicago: ALA.
- Niosi, Andrea E. 1998. "An Investigation of Censorship and Selection in Southern California Public Libraries : A Qualitative Study". *Public Libraries*, 37(5) : 310-315.
- Robbins, L.S. 1998. "Censorship and the American Library: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Response to Threats to Intellectual Freedom 1939-1969" . *Library Quarterly*, 68(1) : 92-94.
- Schladweiler, C. 1996. "The Library Bill of Rights and Intellectual Freedom: a Selective Bibliography". *Library Trends*, 45(1) : 97-125.
- Ward, D.V. 1990. "Philosophical Issues in Censorship and Intellectual Freedom". *Library Trends*, 39(1/2) : 83-91.